



국토교통부

보도해명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	2022. 12. 5.(월)		
담당 부서	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 김형철 (044-201-3927)
		담당자	사무관 송명근 (044-201-3926)
			주무관 김경현 (044-201-3931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토부의 시멘트 차량 운행제한 한시적 완화는 합법적인 조치입니다.

◆ (12.5, 경향) '불법 파업' 비판하더니...시멘트 운송차량에 '불법 과적' 허용한 정부 - 차량 1대당 시멘트 4t 더 싣도록..."국민 안전 위협" 비판

- 도로법에 따라 중량 등이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도 도로관리청의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이 가능합니다.
- 또한 「차량의 운행제한 규정」에 따라, 도로관리청은 파업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물류마비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긴급 수송용 차량에 한하여 적재화물의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 없이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이에, 국토부는 지난 12월 1일에 BCT(Bulk Cement Trailer), BCC(Bulk Cement Cargo) 등 시멘트 운송차량을 '긴급 수송용 차량'으로 우선 지정하고,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도로 운행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.
 - 다만, 도로 및 차량운행의 안전성과 엄중한 물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「차량의 운행제한 규정」이 정한 최대 허용중량(축중량 12톤, 총중량 48톤) 내에서만 운행토록 하였습니다.
- 따라서, 금번 국토부의 한시적 조치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운행하는 차량은 '불법 과적' 차량이 아닙니다.

대한민국
지식브리핑

